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가합51802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3. 주식회사 이송종합건설

4.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신아산

변론 종결 2017. 8. 8.(피고 A, B,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신아산에 대하여)

2017. 9. 12.(피고 주식회사 이송종합건설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7. 9.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76,444,925원 및 그 중 1,366,544,945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32,436,549원 및 그 중 422,538,125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원주시 C 공장용지 1,536㎡'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이송종합건설 사이에 2016.

4.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A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신아산 사이에 2016. 6.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A에게,

- 1) 피고 주식회사 이송종합건설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6. 4. 29. 접수 제244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2)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신아산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6. 6. 3. 접수 제32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다음 표 순번에 따라 '1차 신용보증약정',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B은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1	2012. 10. 23.	1,080,000,000	2017. 10. 20.	피고 A, B
2	2015. 5. 21.	945,000,000	2016. 5. 20.(이후 2017. 5. 19.로 변경)	피고 A

2) 소외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11. 7.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2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20.로 정하여, 2015. 5. 2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6. 5. 20. 소외 회사와 2차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을 2017. 5. 19.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한도액을 한도로 상환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소외 회사는 2016. 10. 7.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1. 21. 신한은행에 1,372,224,395원(=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419,649,993원 + 이자 2,888,132원 +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945,000,000원 + 이자 4,686,27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2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5,679,450원을 회수하였고, 위 변제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556원(= 5,679,450원 × 10/100 × 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4)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589,800원[=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 채무 미이행금 419,649,993원 $\times$ 19/1000 $\times$ 27/365(1차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16. 11. 20.까지)]이고, 원고가 구상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9,308,624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3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은 연 10%이다.

다. 피고 A, 주식회사 이송종합건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신아산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A은 그 소유의 원주시 C 공장용지 1,53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9. 피고 주식회사 이송종합건설(이하 '피고 이송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6. 4. 29. 접수 제24416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2.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신아산(이하 '피고 신아산'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6. 6. 3. 접수 제32091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B, 신아산 :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이송건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376,444,925원[= 잔존 대위변제금 1,366,544,945원(= 1,372,224,395원 - 5,679,450원) + 확정손해금 1,556원 + 위약금 589,800원 + 채권보전비용 9,308,62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366,544,94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3. 2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32,436,549원[=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422,538,125원(= 대출원금

419,649,993원 + 이자 2,888,132원) + 위약금 589,800원 + 채권보전비용 9,308,62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22,538,125원에 대하여 위 2016. 11. 21.부터 위 2017. 3. 27.까지는 위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송건설, 신아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비록 피고 A이 피고 이송건설, 신아산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6. 4. 29. 및 2016. 6. 2.경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4달 내지 5달 후인 2016. 10. 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그 이행기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갑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원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4. 29.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적극재산은 합계 650,620,675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와 피고 이송건설에 대한 채무 및 원주지역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합계 2,887,424,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며,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와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물상보증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7, 9호증, 을다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원주시 C 외 1필지 지상 G 3층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①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변제액 422,538,125원)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와 ② 채권최고액 1,38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변제액 385,348,037원)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전부를 A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반면, 위 G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공동저당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A의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21,184,000	원고	1,366,544,000
2	원주시 E 토지	209,562,000	피고 이송건설	600,000,000
3	F 토지	109,088,700	원주지역농협	10,000,000
4	C 외 1필지 지상 단층 건물	50,085,975	중소기업진흥공단	610,880,000
5	원주시 F 건물	60,700,000	서울보증보험	300,000,000
합계	650,620,675		2,887,424,000	

2)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신아산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6. 2.경에도 피고 A의 적극재산은 650,620,675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2,559,664,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1,366,544,000원 + 피고 이송건설에 대한 채무 600,000,000원 + 원주지역농협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583,120,000원)이

있어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국, 피고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6. 4. 29. 피고 이송건설과 사이에, 2016. 6. 2. 피고 신아산과 사이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9. 피고 이송건설에, 2016. 6. 3. 피고 신아산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송건설, 신아산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 소유의 G 건물 등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G 건물에 이미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이송건설, 신아산의 피담보채권도 소외 회사 소유의 G 건물이 모두 부담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피고 A으로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이송건설, 신아산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이송건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이송건설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600,000,000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당시 소외 회사의 자금 상황이나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올다 제1 내지 11호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이송건설이 2015. 9. 1. 소외 회사와 대금 2,000,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7.부터 2015. 12. 30.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원주시 H 토지 지상에 있던 I 축산물 전시장 및 판매장을 증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이송건설이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5. 12. 31.경 G 건물에 대한 공사를 대부분 마쳤고 소외 회사는 2016. 1.경부터 그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한 사실, 피고 이송건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400,000,000원만을 지급받아 소외 회사에 대하여 6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이송건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이송건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G 건물이 거의 완공되었던 2015. 12. 말경까지 피고 이송건설에 공사대금으로 1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16. 4. 7.경까지도 합계 1,4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채무 600,000,000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 체결되기에 이른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이송건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해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이송건설, 신아산 사이에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A에게 피고 이송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6. 4. 29. 접수 제244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신아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6. 6. 3. 접수 제32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

판사양백성

판사박가람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며,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와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물상보증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7, 9호증, 을다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원주시 C 외 1필지 지상 G 3층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①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변제액 422,538,125원)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와 ② 채권최고액 1,38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변제액 385,348,037원)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전부를 A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반면, 위 G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공동저당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A의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